

● 기타요건
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

- 다만, 영유아(6세 미만)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[서식 4-1호]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(전문 의사 육안검사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)

*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”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기금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

**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. 다만,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K-DST) 결과 '심화평가 권고'인 자료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됨

***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

•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6세 도래 시에는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* 등록이 안 된 경우 읍·면·동에서 등록 유도

- 장애인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

• 읍·면·동 담당자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,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

1. 뇌병변 장애 :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신경외과 또는 신경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
2. 청각 장애 :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(오디오미터)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3. 언어 장애 :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이비인후과·정신과·신경과·구강외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
4. 지적 장애 : 의료기관의 정신과·재활의학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
5. 자폐성 장애 :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
6. 시각 장애 :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

* 사업지침상의 '장애인진단기관 및 전문의'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